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승인을”을 “승인 및 우선 승인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현장 조사의 범위, 방법, 절차, 그 밖에”를 “현장 조사의 범위, 방법, 절차, 우선 승인, 그 밖에”로 한다.

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의 우선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,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것
2. 제1항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을 충족할 것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)	제8조(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 전환 계획의 우선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<u>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,</u> <u>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</u> <u>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</u> <u>실현 가능할 것</u>
	2. <u>제1항의 사업전환계획의</u> <u>승인기준을 충족할 것</u>
② 사업전환계획의 <u>승인</u> 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 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 승인 및 우선 승인을 ----- ----- ----- -----
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.	④ ----- 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④ 제3항에 따른 <u>현장 조사</u>의 범위,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⑤ 제4항----- <u>현장 조사</u>의 범위, 방법, 절차, 우선 승인, 그 밖에 ----- -----.
--	--